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발의자 : 한병도 · 양부남 · 홍기원
윤종군 · 이광희 · 한민수
김한규 · 정을호 · 윤준병
신영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당과 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, 현행법의 정당 등록신청사항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교회나 성당,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신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.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중앙당과 시·도당의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,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으

로써,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, 민주정당으로서 필요한 물적
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2
조제1항제2호,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).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종교시설(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다.

제1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다.

제15조 본문 중 “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”를 “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부터 제14조(변경등록)까지의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형식적 요건을”을 “등록신청사항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당 등록신청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의 시행 당시 중앙당 또는 시·도당 사무소의 소재지가 종교시설로 등록이 된 정당은 이 법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중앙당 또는 시·도당 사무소의 소재지

를 종교시설이 아닌 곳으로 변경하여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</p> <p>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사무소의 소재지 <단서 신설></p>	<p>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</p> <p>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. 다만, 종교 시설(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 한다. 이하 같다)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다.</p> <p>3. ~ 8. (생 략)</p> <p>② • ③ (생 략)</p>
<p>제13조(시 · 도당의 등록신청사항)</p> <p>① 시 ·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사무소의 소재지 <단서 신설></p>	<p>제13조(시 · 도당의 등록신청사항)</p> <p>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. 다만, 종교 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다.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② • ③ (생 략)</p>
<p>제15조(등록신청의 심사)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 다</p>	<p>제15조(등록신청의 심사) ----- ----- --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부터 제14조(변경등록)까지</p>

만,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
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
여 그 보완을 명하고, 2회 이상
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
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
수 있다.

의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
확인한 후 해당 등록을 수리하
여야 한다. -----등록신청사
항을-----

-----.